

제2경인연결(안양~성남간)고속도로  
민간투자사업변경실행협약

2010. 5. 17

국 토 해 양 부  
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(주)



# 변경 실시협약

국토해양부장관(이하 “주무관청”이라 한다)과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(이하“사업시행자”이라 한다)는 2007년 7월 31일 제2경인연결(안양-성남간)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(이하“실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던 바, 실시협약 제13조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보상비를 전용하여 우선 사용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실시협약(이하 “변경실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## 제 1 조 정의

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
## 제 2 조 총사업비의 변경



(1) 실시협약 제1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당 초	신 설
-	본 실시협약 제13조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증가되는 총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“보상비(민간부담분)”를 전용하여 우선 사용하며, 그 잔액 상당액은 보상비에 사용한다.

## 제 3 조 보상업무


(1) 실시협약 제5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사업부지에 대한 보상비 중 490억원(2004년 6월30일 불변 가격 기준)에 대해서는 총민간사업비에 포함하며,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주무관청의 보상비 재원에 충당하기로 한다.	사업부지에 대한 보상비 중 490억원(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)에 대해서는 총민간사업비에 포함하며,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제13조 제7항에 따라 전용하고 남은 경우, 잔액은 주무관청의 보상비 재원에 충당하기로 한다.

#### 제 4 조 부록의 변경

실시협약 부록2, 부록3, 부록4는 총사업비변경, 민간부담 보상비재원의 실제 투입실적을 반영하여 최초통행료산정 시점에서 변경하기로 한다.

#### 제 5 조 실시협약의 효력변경

실시협약의 규정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  사항에 대하여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,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,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#### 제 6 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

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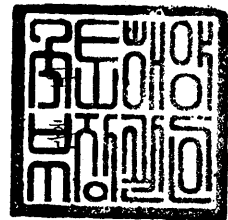
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기재 일자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(서명란은 다음장에)

2010년 5 월 17 일



대 한 민  
국 토 해 양 부 장 관 정 중



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주식회사  
대 표 이 사 서

